

지게차 불량작업 추방!

부상자



1,144명

사망자



34명

지게차는 사고사망 기인물 중 1순위 기계·설비
한해 평균 1,144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고사망자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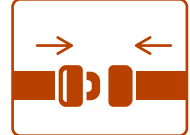
지게차 사고사망 예방 3원칙



1. 자격자 운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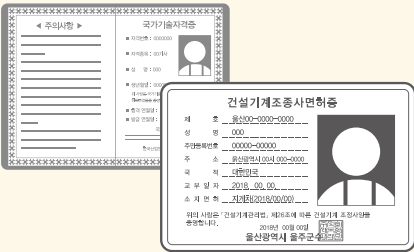
2. 시야 확보



3. 안전띠 착용

- ① 운전은 **자격**을 가진 지정된 자가 운전할 것
- ② 운전자의 **시야**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, 후진 운전 시 반드시 후방을 확인할 것
- ③ 운전자는 좌석 **안전띠**를 착용할 것

주요 점검 항목



점검 항목 1

자격자 운전
무자격자 운전으로 인한 충돌 및 뒤집힘 위험



점검 항목 2

시야 확보
운전자 시야 미확보에 따른 충돌 및 부딪힘 위험



점검 항목 3

안전띠 착용
운전자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깔림 위험



지게차 조종면허

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이 있는 지게차가 대상이며 **3톤을 기준으로** 시·도지사가 조종면허를 달리 발급

3톤 이상	3톤 미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[인력공단] 적성(신체)검사 [지자체] 지게차조종면허 발급 [지자체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3톤 이상 지게차조종면허를 가진 자 2)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자중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(12hr) 이수자 [지자체 지정] 지게차조종면허 발급 [지자체]

※ 다만, 전동식으로 슬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**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** 운행하는 것은 제외

안전대책

항 목	주요 조치내용
1. 안전통로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전용통로 확보(작업공간이 충분할 경우) ② 통로 구분(바닥 면 또는 선을 색채로 표시) ③ 반사경 설치(교차로 등 사각지대)
2. 안전장치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안전벨트 부착 ② 전조등, 후미등, 후사경 및 헤드가드 등 설치
3. 화물적재의 안전성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적재하중 초과하여 적재금지 ②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금지 ③ 충분한 강도의 팔레트 또는 스키드 사용
4. 지게차 안전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운전자 시야 확보 ② 포크에 화물을 매달은 상태에서 주행(급선회) 금지 ③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지정 및 표지판 부착
5. 주용도 외 사용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포크에 작업자를 탑승시켜 고소작업 수행 금지 ② 지게차를 이용 화물을 당기거나 미는 작업금지
6. 기타 관리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게차 전담관리자 지정 및 시동키 관리 ② 무자격자 운전금지

위험포인트



- ① 운전자 시야 불량, 운전 미숙, 과속에 의한 부딪힘 위험
- ② 경사면 등에서 급선회하여 전도되는 지게차에 깔림 위험
- ③ 화물 과다적재, 편하중, 지면요철 등에 의해 떨어진 화물에 맞음 위험
- ④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 중 떨어짐 위험

안전보건공단

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(북정동) / 고객센터 T. 052-7030-500, 1644-4544
 자료다운로드 :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안전보건자료실